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산업분류및용어정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
YELLOW S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종 류	배 출 규 모
제 1 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 ³ 이상인 사업장
제 2 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m ³ 이상, 2,000m ³ 미만인 사업장
제 3 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m ³ 이상, 700m ³ 미만인 사업장
제 4 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m ³ 이상, 200m ³ 미만인 사업장
제 5 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text{폐수배출량} = \text{용수사용량} - (\text{생활용수량} + \text{간접냉각수량} + \text{보일러용수량} + \text{제품함유수량} + \text{공정 중 증발량} + \text{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text{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참고2

통계청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업종 설명

업종코드	입주제한업종	설명	비고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p>석유 또는 석유 부생가스 중에 함유된 탄화수소를 분해·분리 또는 기타 화학 처리하여 석유화학계 기초제품과 그 유도체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유화학계 기초제품 제조에 연관된 지방족계 또는 방향족계 유도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한다.</p> <p><예시>·탄화수소 지방족 화합물(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제조 ·탄화수소 방향족 화합물(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등) 제조 ·탄화수소 할로겐화 유도체 제조 ·탄화수소 질산화 유도체 제조 ·탄화수소 유황화 유도체 제조</p> <p><제외>·콜타르 증류 생산품 제조(20119)</p>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물질 제조업	<p>천연수지, 나무 및 식물성 피치 등을 증류하여 유연제 엑스를 제외한 증류 물질 및 기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톨유(tall oil), 수탄 및 폐수탄 제품의 생산활동도 포함한다.</p> <p><예시>·목탄(셀 또는 너트 모양의 탄 포함) 제조 ·목타르, 목타르유, 목크레오소트(creosote), 목나프타, 식물성 피치 제조 ·로진·수지산 또는 식물성 피치 조제품 제조 ·톨유(tall oil) 제조 ·수탄(animal charcoal, 獸炭) 제조</p> <p><제외>·착화탄 제조(33992) ·활성탄, 활성처리한 광물성 물질 제조(20499)</p>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p>콜타르 및 기타 광물타르를 고온으로 처리하여 석탄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알코올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예시>·벤젠, 크실렌, 나프탈렌, 페놀 및 톨루엔 제조 ·콜타르 분류(分溜) 잔재물(피치) 제조 ·솔벤트 나프타 제조, 광물타르 증류 생산물 제조 ·아민 관능 화합물 제조, 우레인 및 그 유도체 제조 ·효소 및 기타 효소제품 제조, 질소 관능 화합물 제조 ·알데히드, 퀴논 관능 화합물 제조 ·모노카르복시산 및 그 유도체 제조 ·페놀 및 그 유도체 제조 ·부탄올, 에탄올, 옥탄올, 메탄올 제조 ·무기산 에스테르 및 그 염과 유도체 제조 ·유기 황화합물 및 기타 유기·무기 화합물 제조 ·에틸, 과산화알코올, 과산화에틸, 에폭시드아세탈 및 그 유도체 제조 ·산소 관능 아미노 화합물(리신과 그 에스테르 및 그 염 제외) 제조</p> <p><제외>·석유화학계 방향족 화합물(벤젠, 톨루엔 등) 제조(20111) ·톨오일, 수탄 및 폐수탄 제조(20112) ·활성화된 광물성 제품 제조(20499)</p>	

업종코드	입주제한업종	설명	비고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합물질 제조업	<p>무기화학 원소, 무기산 및 금속·비금속 산화물(무기염료용 금속산화물 제외), 알칼리 및 기타 기초 무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합·배합·농축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p> <p><예시>·아세틸렌블랙 제조 ·이산화규소 제조, 이산화황 제조, 붕소 산화물과 붕산 제조 ·방사성 원소 및 동위원소 제조, 방사성 물질 혼합물 제조 ·비금속 황화물 제조, 수산화나트륨 제조, 과산화수소 제조 ·수은 제조, 카본블랙 제조, 탄화칼슘 및 탄화물 제조 ·규소 및 염소 제조, 고압전기용 석영 제조, 플루토늄 농축물 제조 ·핵연료 농축, 정제한 황 제조, 배소한 황화철광 제조 ·비금속 할로겐 화합물 및 황화물 제조 ·무수 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제조 ·알루미늄·마그네슘·스트론튬·바륨 산화물 및 과산화물 제조 ·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염 제조 ·합성 또는 재생 귀석 또는 반귀석 제조</p> <p><제외>·산업용 가스 제조(20121) ·무기 안료용 및 금속 산화물 및 관련제품 제조(20131)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2031)</p>	
20131	무기안료용 금속산화물 및 관련제품 제조업	<p>무기 안료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금속 산화물 및 각종 무기 염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예시>·산화 아연·망가니즈·티타늄 제조 ·산화철과 수산화철 제조, 산화 니켈·텅스텐 제조 ·색소도 가공품 제조</p> <p><제외>·알루미늄·마그네슘·스트론튬·바륨 산화물 제조(20129) ·조제 무기안료 제조(20132)</p>	
20132	염료, 제조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p>동·식물성 재료를 이용한 염료용·유연제용 추출물, 유연제로 사용되는 타닌(tannin), 이들을 유기 용제 등으로 추출한 물질, 합성 또는 조제 유연제 및 유연처리 이전에 사용하는 효소계 조제품, 합성 유기 염료, 조제 무기 안료 및 기타 착색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예시>·동물성 착색제 제조, 염료용 동·식물성 추출물 제조 ·섬유 유연제 제조, 피혁 유연제 제조 ·스틸벤(stilbene) 염료 제조, 니트로조(nitroso) 및 니트로(nitro)염료 제조 ·퀴논이민(quinonimin) 염료 제조 ·모노 및 폴리아조(azo) 염료 제조</p> <p><제외>·무기 안료 및 금속 산화물 제조(20131) ·요업용 조제 안료 및 조제 유백제 제조(20412)</p>	

업종코드	입주제한업종	설명	비고
20201	합성고무제조업	<p>합성고무(라텍스 포함)와 식물성 기름에서 유도되는 팩티스, 천연고무 및 유사 천연검의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예시>·부타디엔고무(BR) 제조 ·클로로프렌고무(CR) 제조 ·아크릴로니트릴-이소프렌 고무 제조 ·천연 및 합성고무 혼합물 제조 ·식물성 기름에서 유도된 팩티스 제조 ·아이소프렌고무(IR) 제조,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제조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제조</p>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p>화학적 합성방법에 의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원료 상태의 합성수지(플라스틱 소재 물질)를 제조하거나 1차 형태의 천연 중합체(알긴산 등)·경화 단백질 및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인 변성 천연 중합체·섬유소(셀룰로오스) 및 재생 섬유소와 이들의 화학적 유도체 등 기타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자체 생산하고, 유리섬유, 탄소섬유, 금속 분말 등의 첨가제 및 각종 강화제 등을 혼합하여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연관 공정으로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p> <p><예시>·에틸렌 중합체 제조 ·폴리아미드 제조, 스티렌 중합체 제조, 아미노수지 제조 ·에폭시수지 제조, 폴리우레탄 제조, 프로필렌 중합체 제조 ·초산비닐 중합체 제조, 페놀수지 제조, 실리콘수지 제조 ·폴리에스터수지 제조, 아크릴 중합체 제조 ·재생셀룰로오스 제조, 알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제조 ·셀룰로오스 에테르 제조, 변성 천연 중합체 제조 ·이온교환수지 제조, 초산셀룰로오스 제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수지 제조</p>	
20203	혼성 및 재생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p>구입한 합성수지 등 각종 플라스틱 소재 물질에 유리섬유, 탄소섬유, 금속 분말 등의 강화제 및 각종 첨가제 등을 배합, 혼합, 착색 등으로 가공하여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킨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생산하거나 재생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용해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상태의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수지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예시>·배합한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수지 등) 제조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p> <p><제외>·자체 생산한 합성수지를 이용한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20202)</p>	

업종코드	입주제한업종	설명	비고
20311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라질 화학비료 제조업	<p>무기질 질소 비료 및 질소 화합물을 제조하거나 비료용 광물 및 기초 화합물을 화학 처리하여 인산질 또는 칼리질을 함유한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예시>·질소질 비료 제조(무기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소 화합물 제조 ·인산질 비료 제조 ·칼리질 비료 제조 ·질산, 암모니아, 요소, 황산암모늄, 질산칼륨(초석) 제조 <p><제외>·유기질 질소비료 제조(20313)</p>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p>화학비료의 3대 요소인 질소, 인, 칼륨 중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함유한 비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서로 다른 무기질 비료 성분을 구입·배합하여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외 기타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p> <p><예시>·복합비료 제조(무기질)</p> <p><제외>·유기질 질소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혼합비료 제조(20313)</p>	
20321	화학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p>가정용, 공중위생용,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화학 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식물 성장 조절용 화학 약제 및 유사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p> <p><예시>·화학 살충제, 살균제, 방충제, 소독제 제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 성장 촉진제, 성장 조절제, 발아 억제제 제조 ·살서제(귀약) 제조 ·가정용, 공중위생용 화학 살균 및 소독제 제조 <p><제외>·생물학적 농약, 미생물 농약, 바이러스 농약 제조(20322)</p> <p>·가정용 세정 및 광택제, 방취제 및 유사 위생제품 제조(2042)</p>	

업종코드	입주제한업종	설명	비고
20322	생물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p>생물, 미생물, 식물 또는 천연 유기·무기 화합물을 유효 성분으로 제조한 가정용, 공중위생용, 농업용 천연 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식물 성장 조절용 천연 약제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p> <p><예시>·생물학적 살충제,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성분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p> <p>·식물성 살충·살균제 제조 ·생화학성 농약 제조 ·천연 식물 보호제 제조</p> <p>·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재료 농약</p> <p>·천연으로 생성된 유기 또는 무기 화학물 성분 살균, 살충제 및 식물 보호제</p> <p><제외>·화학적으로 조성된 농약 제조(20321)</p>	
20499	그 외 기타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p>향수, 식품, 음료 등의 향료로 사용되는 동·식물성의 방향유(정유), 동·식물성 수지질 재료로 만든 레지노이드, 정유 농축물, 정유의 테르펜계 부산물·혼합물·수성 증류액 및 용액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광물성, 동물성 및 식물성 재료 등을 혼합·조합하여 각종 재료 처리용 조제·유통제품(석유 성분 함유량 70% 미만)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필기용 잉크, 용접용 분 또는 페이스트 및 금속 표면처리 용제, 활성탄, 고무 가황 촉진제, 촉매제 및 기타 산업용 화학제품, 안티녹제, 부동액,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투여용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p> <p><예시>·정유 혼합물 제조·정유 수성 증류액 및 용액 제조</p> <p>·합성 향료 혼합물 제조 ·정유 테르펜계 화합물 제조</p> <p>·조제 그리스 제조(석유류 함유량 70% 미만)·활성탄 제조</p> <p>·산, 알칼리 처리 등으로 활성화된 광물성 물질(활성 규조토 등) 제조</p> <p>·조제 절삭제 제조 ·소화기용 조제품 제조</p> <p>·전자공업용 화학 원소 및 화합물 제조·도금용 조제품 제조 ·조제 유기 과산화물 제조·고무, 플라스틱용 복합 가소제 제조</p> <p>·조형용 페이스트(반죽) 제조 ·각종 첨가제가 포함된 치과용 플라스틱 조형 조제품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p> <p>·조제 유통제품 등에 사용되는 산화 억제제, 검화 억제제, 점도 향상제, 분산방지제 제조</p> <p>·염색 촉진 및 고착용 염색 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 제조</p> <p>·부동액 등 동결 방지제 ·LCD용 액정액 제조</p> <p>·이화학 시험관용 진단 시약 ·의학용 ·수의학용 ·과학용 ·산업 실험용 조제 및 분석 시약</p> <p>·이화학용 시약이 합침 또는 도포된 종이 ·플라스틱 및 기타 물질 제조</p> <p>·이화학용 시약 관련 조립용품 묶음(키트)</p> <p>·화지에 투여되지 않는 혈액 ·소변 검사용 시약</p> <p>·필기용, 제도용 잉크 제조</p> <p><제외>·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진단 시약 제조(21300)</p> <p>·석유 및 석유를 주성분으로 한 윤활유 및 그리스의 재생품 제조(19221)</p> <p>·인쇄 잉크 제조(20413)</p> <p>·미생물용 조제 배양제 제조(21102)</p>	

업종코드 (첨단업종)	입주제한업종	설명	비고 (적용범위)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p>섬유, 종이, 펄프, 화장품 및 세척제, 농약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유기 또는 조제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외>·비누 및 합성세제 제조(20422)</p>	<p>○ 계면활성제 중 다음의 것만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분자형 계면활성제 - 양이온 계면활성제 - 친환경 계면활성제(바이오유래, 유용미생물활용, 인체친화적, 생분해성)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p>야고, 접착제, 젤라틴, 펩톤 및 기타 펩톤 성분과 이들의 유도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을 주성분으로 접착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p> <p><예시>·젤라틴 캡슐 제조 ·카세인염과 카세인 유도체 제조 ·알부민(난백 제외), 알부민산염 및 그 유도체 제조 <제외>·전분제 식용 및 의약품 캡슐 제조(10713)</p>	<p>○ 전기·전자용 기능성 접착제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도성 접착제 - 광섬유용 접착제 -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접착제 - 고내열 금속용 접착제 <p>○ 의료용 접착제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조직(피부 등)용 접착제 - 경조직(치아·뼈 등)용 접착제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p>동·식물성 유지, 식물, 해조류, 축산 폐기물 등을 재료로 추출 및 발효 등의 공정을 거쳐 연료용, 발전용 등에 사용하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가스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바이오 연료와 석유 및 역청유 혼합물(중량 기준으로 석유 및 역청유 함유량이 70% 미만)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p>	<p>○ 해양 바이오디젤 및 혼합유</p>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p>석탄 혹은 석유 증류물 등을 원료로 유기 단량체(모노머)를 중합하고 필라멘트사, 스트립, 토우 및 스테이플 상태의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예시>·나일론 및 비닐론 제조, ·아라미드 합성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리덴 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 섬유 제조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 ·폴리에틸렌 섬유 제조 ·아크릴 섬유 제조 ·폴리프로필렌 섬유 제조</p>	<p>○ 아라미드(aramid)섬유, PBO 섬유</p> <p>○ 메디컬 섬유소재(조직재생용 섬유소재,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정형외과용 섬유소재)</p>

1. 특정대기유해물질

환경오염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고 환경분야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오염물질 중에서도 특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농수산물의 생육에 직접 간접으로 중대한 위해(危害)를 주는 물질이 판명됨에 따라 이들을 보다 더 엄격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정유해물질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특정대기 유해물질과 수질환경 보전법에서 규정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특정 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 먼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 27. 에틸렌옥사이드
- 28. 디클로로메탄
- 29. 스틸렌
-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31. 1,2-디클로로에탄
- 32. 에틸벤젠
- 33. 트리클로로에틸렌
- 34. 아크릴로니트릴
- 35. 히드라진

2. 지정악취물질(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

-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며 생활환경에 해를 끼치는 기체상의 물질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싸이올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의 물질이 있다. 악취는 육체에 미치는 해보다는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중요하다. 악취는 식욕을 잃게 하고, 호흡을 곤란하게 하며, 멀미와 구토 등을 일으켜 정신의 혼란을 초래한다.

-관능시험법, 기기분석법 등을 이용하여 배출구 또는 부지경계선상에서 측정한다. 관능시험법의 경우 직접관능법, 공기희석관능법이 있는데 규제기준은 2도(度) 이하로 규제하고 악취물질 중 **암모니아**, 메테인싸이올,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뷰티르아세테이트, 프로피온산, n-뷰티르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티르알코올의 22개는 지정악취물질로 정하여 별도의 규제기준을 정해 기기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물리적 방법으로는 수세법, 활성탄흡착법 및 공기희석법이 있고, 화학적 방법으로는 **오존산화법**이나 염소산화법, 약액세정법, 이온교환수지법, 연소법, 은폐법 등이 있다.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법으로는 **바이오필터**법이 있다. 발생원은 석유화학제품 제조, 생활하수, 산업폐수, 가축사육장, 식품가공, 페인트 제조, 주물 제조, 석유정제, 분뇨처리장, 도살장, 비료 제조, 플라스틱 제조 연소시설, 도장, 도금공정이다.

[별표 1] <개정 2011.2.1>

지정악취물질(제2조 관련)

종류	적용시기
1. 암모니아 2. 메틸메르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2005년 2월 10일부터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틸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13. 톨루엔 14. 자일렌 15. 메틸에틸케톤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7. 뷰틸아세테이트	2008년 1월 1일부터
18. 프로피온산 19. n-뷰틸산 20. n-발레르산 21. i-발레르산 22. i-뷰틸알코올	2010년 1월 1일부터

3.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이다.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 등 광화학 산화성물질을 생성시켜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을 일컫는다. 대기오염 뿐만 아니라 발암성 물질이며,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이므로 국가마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벤젠, 아세틸렌, 휘발유 등을 비롯하여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용매 등 다양하다.

VOCs라고도 한다.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과 공존하면 햇빛의 작용으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 및 팬(PAN:퍼옥시아세틸 나이트레이트) 등 광화학 산화성 물질을 생성시켜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기오염물질이며 발암성을 지닌 독성 화학물질로서 광화학산화물의 전구물질이기도 하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이며 악취를 일으키기도 한다.

국내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는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또는 기타 물질로 정의하는데, 환경부고시 제1998-77호에 따라 벤젠·아세틸렌·휘발유 등 31개 물질 및 제품이 규제 대상이다.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매에서 화학 및 제약공장이나 플라스틱 건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유기가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끓는점이 낮은 액체연료,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 화합물 등 생활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탄화수소류가 거의 해당된다.

배출원은 토양과 습지·초목·초지 등의 자연적 배출원과 유기용제사용시설·도장시설·세탁소·저유소·주유소 및 각종 운송수단의 배기가스 등의 인위적 배출원이 있는데, 배출량은 세계적으로 유기용제사용시설과 자동차 등의 이동 오염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경과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5년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여천공업기지와 울산·미포 및 온산공업 단지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였다. 1997년 12월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규제 대상의 범위를 탄화수소류 중 레이드증기압이 27.6kPa 이상인 물질에서 10.3kPa 이상인 물질로 확대하고 주유소를 규제대상시설로 추가하였으며, 1999년 10월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0.3kPa 이하의 물질 중의 유해한 물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레이드증기압의 범위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정제 제조시설이나 저장 및 출하시설,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등은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98호, 2009. 8.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전문보기)

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2. 내 용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가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연번	제품 및 물질명	분자식	CAS No.	
1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C ₂ H ₄ O[CH ₃ CHO]	75-07-0
2	아세틸렌	Acetylene	C ₂ H ₂	74-86-2
3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Acetylene Dichloride	C ₂ H ₂ Cl ₂	540-59-0
4	아크롤레인	Acrolein	C ₃ H ₄ O	107-02-8
5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C ₃ H ₃ N	107-13-1
6	벤젠	Benzene	C ₆ H ₆	71-43-2
7	1,3-부타디엔	1,3-Butadiene	C ₄ H ₆	106-99-0
8	부탄	Butane	C ₄ H ₁₀	106-97-8
9	1-부텐, 2-부텐	1-Butene, 2-Butene	C ₄ H ₈ [CH ₃ CH ₂ CHCH ₂], C ₄ H ₈ [CH ₃ (CH) ₂ CH ₃]	106-98-9, 107-01-7
10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CCl ₄	56-23-5
11	클로로포름	Chloroform	CHCl ₃	67-66-3
12	사이클로헥산	Cyclohexane	C ₆ H ₁₂	110-82-7
13	1,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C ₂ H ₄ Cl ₂ [Cl(CH ₂) ₂ Cl]	107-06-2
14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C ₄ H ₁₁ N[(C ₂ H ₅) ₂ NH]	109-89-7
15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C ₂ H ₇ N	124-40-3
16	에틸렌	Ethylene	C ₂ H ₄	74-85-1
17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CH ₂ O[HCHO}	50-00-0
18	n-헥산	n-Hexane	C ₆ H ₁₄	110-54-3
19	이소프로필 알콜	Isopropyl Alcohol	C ₃ H ₈ O[(CH ₃)CHOHCH ₃]	67-63-0
20	메탄올	Methanol	CH ₄ O[CH ₃ OH]	67-56-1
21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C ₄ H ₈ O[CH ₃ COCH ₂ CH ₃]	78-93-3
22	메틸렌클로라이드	Methylene Chloride	CH ₂ Cl ₂	75-09-2
23	엠티비이(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C ₅ H ₁₂ O[CH ₃ OC(CH ₃) ₂ CH ₃]	1634-4-4
24	프로필렌	Propylene	C ₃ H ₆	115-07-1
25	프로필렌옥사이드	Propylene Oxide	C ₃ H ₆ O	75-56-9
26	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C ₂ H ₃ Cl ₃	71-55-6
27	트리클로로에탄	Trichloroethylene	C ₂ HCl ₃	79-01-6
28	휘발유	Gasoline	-	86290-81-5
29	납사	Naphtha	-	8030-30-6
30	원유	Crude Oil	-	8002-5-9
31	아세트산(초산)	Acetic Acid	C ₂ H ₄ O ₂	64-19-7
32	에틸벤젠	Ethylbenzene	C ₈ H ₁₀	100-41-4
33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C ₆ H ₅ NO ₂	98-95-3
34	톨루엔	Toluene	C ₇ H ₈	108-88-3
3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C ₂ Cl ₄	127-18-4
36	자일렌(o-, m-, p-포함)	Xylene	C ₈ H ₁₀	1330-20-7 (95-47-6, 106-42-3), 108-38-3,
37	스틸렌	Styrene	C ₈ H ₈	100-42-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 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
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
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
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
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
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
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
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사. 도료류 판매소
-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 자. 화약류 저장소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작물 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가. 하수 등 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되, 위 표에 따른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10. 4. 12.> 3. 삭제 <2010. 4. 12.> 4. 삭제 <2010. 4. 12.>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대학·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1., 2013. 3. 23., 2014. 2. 28., 2016. 2. 15., 2016. 8. 18.>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소음·진동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6의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8의2.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2조의2(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영 제6조제6항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2. 수영장 운영업
3. 볼링장 운영업
4. 당구장 운영업
5.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6. 골프연습장 운영업
7.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전문개정 2009. 8. 7.]